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64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 김용만 • 민병덕 • 이훈기

이인영 • 이수진 • 한민수

박상혁 · 임광현 · 신영대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교육·훈련 및 보훈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의 경우 보훈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이 5명에 불과하여 그 연구기능이 제한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기관의신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삭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별도의 보훈 정책 전문 연구기관(가칭 '한국보훈정책연 구원')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제6호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한국보훈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정책기획 및 평가 등은 한 국보훈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 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제6조(사업)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	1		
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			
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			
호 및 의학적 · 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u>조사·연구</u>	<u>조사·연구(한국보</u>		
	훈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2		
교육 등 <u>교육·훈련</u>	<u>교육·훈련(정책기획</u>		
	및 평가 등은 한국보훈정책연		
	구원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제		
	<u>외한다)</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u><삭 제></u>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u>정책의 연구</u>			
<u>7</u> . ~ <u>11</u> . (생 략)	$\underline{6}$. $\sim \underline{10}$. (현행 제7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		